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국가정보원 소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예기치 못한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고 국가전략기술·핵심 인프라 보호 등을 위해 비밀 범주를 재정비하는 한편 비밀 누설에 따른 피해 위험도에 따라 비밀 등급 기준을 정비하면서 국가 중요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등 현행 보안업무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 보안관리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안 업무에 관한 국가정보원장의 역할 추가(안 제3조의2)

- 1) 보안 관련 기술개발 업무를 전자적 방법에 한정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하도록 '전자적 방법에 의한' 문구를 삭제함.
- 2)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교육과정 개설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3)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명기된 국가 기밀 취급 인원을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 등 제반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나. 중앙행정기관등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기준 제시(안 제3조의3)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보안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다. 비밀의 범주 확대 및 등급별 구분 기준 명확화(안 제4조)

- 1) 비밀의 범주에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비밀의 등급 분류 기준을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위험 인식 수준에 따라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 ‘중대한 위험’, ‘위험’ 순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함.
- 2) I 급비밀의 정의에 전쟁이 수반되지 않는 외교관계 단절을 반영하여 ‘단절되고’를 ‘단절되거나’로, 국가방위를 위한 과학과 기술의 경계가 희미하고 개발을 위태롭게 한다는 전제가 모호하여 ‘과학기술’로 용어를 대체하고 위험의 전제도 ‘침탈되거나 그 개발이 현저히 어렵게 되고’로 수정함.

라.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지정 기준 변경(안 제32조)

안 제4조의 비밀 범주 재정립에 맞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지정 기준 중 비밀의 누설에 따른 피해의 영향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으로 통일함.

마. 보안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보완(안 제35조의2, 부칙 제2조 신설)

- 1)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구체적인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1개월 내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회신하도록 함.
- 2) 다만, 이 영 시행일 전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

바. 신원조사 관련 일부 미비점 개선(안 제36조)

- 1) 암호자재 취급 인가 예정자와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지역 출입 예정자와 같은 국가 기밀 취급·접근 예정자를 신원조사 대상으로 추가함.
- 2) 국가정보원 본청·지부·외곽시설 등 관련 시설에 근무 또는 출입하려하거나, 관련 업무 수행 및 물품을 취급하려 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시함.

사. 보안 업무 수행 전담인력의 양성(안 제43조의2 신설)

- 1)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2)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신원조사 권한의 일부를 위탁(안 제45조)

대통령경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원조사 권한 일부의 위탁 대상 기관으로 현행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 더해 대통령경호처장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 중 “전자적 방법에 의한”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안 업무 수행 인력 양성 지원

8.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제3조의3제1항 중 “비밀의 공개 등”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보안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보안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보안 업무 수행 실태 평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안 업무 수행상 중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호 중 “단절되고”를 “단절되거나”로, “국가의 방위계획·정보 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를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이 침탈되거나 그 개발이

현저히 어렵게 되고,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경제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막대한 지장을 끼칠”을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해를 끼칠”을 “위험을 초래할”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전략적·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을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연쇄적”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 중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를 “개선 조치계획을 1개월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회신하여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2호의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를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6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지역 출입 예정자 중 관계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국가정보원 관련 시설에 근무·출입하려 하거나, 국가정보원 관련 물품을 취급 또는 계약을 수행하려 하는 사람 등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지원)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직무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중 “국방부장관과”를 “국방부장관, 대통령경호처장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측정 결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국가정보원장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생략)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현행과 같음)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u>전자적 방법에 의한</u>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3.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3.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3.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3.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u>보안 업무 수행 인력 양성 지원</u>
<신설>				8. <u>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u>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등에 <u>비밀의 공개</u> 등 해당 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등에 해당 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등에 해당 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등에 해당 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등에 해당 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u>
				1. <u>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u>
				2. <u>보안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u> 에 관한 사항
				3. <u>보안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u> 에 관한 사항

제4조(비밀의 구분) (생략)

1. I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II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III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4.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보안 대책 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보안 업무 수행 실태 평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안 업무 수행상 중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비밀의 구분) (현행과 같음)

1. I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 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이 침탈되거나 그 개발이 현저히 어렵게 되고,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경제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2. II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3. III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제32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선박 등 중요 장비를 각각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35조의2(보안측정 결과의 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각 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생략)

제36조(신원조사)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제32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선박 등 중요 장비를 각각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보안측정 결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각 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계획을 1개월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신원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또는

3. ~ 5. (생략)

<신설>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신설>

<신설>

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

3. ~ 5. (현행과 같음)

6.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지역 출입 예정자 중 관계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국가정보원 관련 시설에 근무·출입하려 하거나, 국가정보원 관련 물품을 취급 또는 계약을 수행하려 하는 사람 등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한다.

제43조의2(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지원)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

제45조(권한의 위탁)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6조에 따른 신원 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직무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5조(권한의 위탁)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6조에 따른 신원 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 대통령경호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측정 결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정보원장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정보원	
연 락 처	(02) 2197 - 9179